

조선시대 과거 낙폭지(落幅紙)의 재활용 문화*

윤선영(尹善英)**

목 차

1. 들어가며
2. 조선 시대 관청의 종이 물자 부족 실태와 재활용 문화
3. 낙폭지의 다양한 활용처
4. 낙폭지 활용의 제약상
5. 나가며

국문초록

본 논문은 조선 시대 과거 시험의 답안지인 시권(試券)이 고시 후 어떻게 재활용되었는지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조선시대 관청에서 사용한 여러 종이 물자들의 실태에 대해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 관청에서 사용하는 여러 공문서에 후지(厚紙)를 쓰려는 관습 등으로 인해 종이 물자가 부족해진 상황이 심각하게 도래하였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낙방한 사람들의 답안지인 낙폭지는 재활용되기에 좋은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었다. 낙폭지는 군사물품과 영건(營建)에 필요한 여러 작업의 부재(部材), 각종 문서 및 서적의 포장과 병풍 등 서화류 미술품의 배접, 의례시 필요한 의복과 기구, 각종 장인들이 만드는 기물 등 종이 필요한 거의 모든 곳에 재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감시낙폭지는 모든 분야에 골고루 활용되었으며, 정시낙폭지는 영건과 장인들의 기물에 주로 쓰였고 동당낙폭지는 서적의 포장에서 대부분 활용되었다.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6083854)

** 고려대 한자한문연구소 연구교수.

시기가 흐를수록 낙폭지의 활용처는 더욱 확대되고 세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현재 유물의 보존처리 과정에서 낙폭지들이 하나씩 발견되고 있는 바, 이를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해당 문화재의 제작 시기 및 원형 상태를 추측하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 또한 제대로 보관하고 분석해 보아야 할 문화재라는 인식이 제고되어야 할 시점이다.

주제어: 조선시대, 공문서, 과거, 낙폭지(落幅紙), 시권(試券), 재활용.

1. 들어가며

본 논문은 조선 시대 과거 시험의 답안지인 시권(試券)이 고시 후 어떻게 재활용 되었는지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시권이란 과거 시험에서 제출된 답안지를 일컫는 말로, 과지(科紙) 또는 명지(名紙)라고도 일컫는다. 조선 시대에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식년시(式年試)를 설행하였으며,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이를 기념하여 증광시(增廣試)를 치렀다. 이 때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는 취지의 여러 시험 및 임금이 직접 시험장에 나아가서 치르는 친림시(親臨試) 등의 경우는 국가에서 시험지를 제공해 주었으며¹⁾, 식년시와 같은 정기시(定期試)의 경우는 응시자들이 시지(試紙)를 직접 마련하여 예조에 바치면 예조에서 과거지보(科擧之寶)를 안보한 후 돌려주었다.²⁾

조선 후기로 갈수록 각종 별시(別試), 정시(庭試), 춘당대시(春塘臺試) 등 시험의 종류가 늘어났으며, 각 시험에 응시하는 거자(擧子)들 또한 큰 폭으로 늘게 된다.³⁾ 더구나 즉일방방(即日放榜) 했던 특별 시험을 제외하고는, 식년시와 증광시의 경우 소과와 문과 시험이 한 번 설행될 때마다 한성부와 지방의 각 도 등 최소 10여 개 이상의 시소(試所)에서 초시(初試)가 치러졌다. 그러므로 과거 시험이 한 번 치러질 때마다 시험에 소용되는 시지(試紙)를 마련하는 일은 국가와 개인 모두에게 제법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종이 물자가 상당히 귀했던 당시의 상황을 감안해 볼 때 그 수많은 종이들을 그대로 폐기하지는

1) 김동석, 『조선시대 시권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3, 29면 참고.

2) 『國朝五禮儀』 卷4, 「嘉禮, 文科殿試儀」, “前一日, 舉人納試紙于禮曹, 啓聞用寶, 其日還給.”

3) 박현순은 「17세기 과거 응시자 증가 현상에 대한 고찰」, 『사학연구』 93, 한국사학회, 2009, 89-145면에 서, 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응시자격의 완화, 응시 필요성의 증가, 과거 응시의 용이화 등을 거론하였다.

않았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시험에 소용된 시지는 과연 어떻게 처분되었을까?

과거 시험을 본 후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최종 결정되면 합격한 시권은 응시자에게 나누어 주고 불합격한 시권은 대부분 돌려주지 않고⁴⁾ 재활용하였다. 이처럼 불합격한 시권을 낙폭지(落幅紙)라고 일컫는다.⁵⁾ 낙폭지는 대개 서울과 지방의 시소에서 일정한 수량을 걷어서 비변사로 보내면, 비변사에서는 각 사(司)와 군문(軍門)의 요구에 따라 정해진 예대로 지급을 지시하였다.⁶⁾ 이러한 낙폭지들은 어떻게 관리되었으며 어떠한 곳에 쓰이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재활용된 낙폭지는 전래된 유물의 안쪽 부분이나 뒷 부분에 주로 배접되었기 때문에 보존처리과정 등을 통해서만 확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실물이 온전히 보관되기 힘든 구조적 문제와, 낙폭지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상황이 겹쳐지면서 특별한 조치 없이 폐기된 경우도 있었다.

이에 지금까지 낙폭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최근에 창덕궁 인정전에 배설된 <일월오봉도(日月五峰圖)>의 뒷면 배접지가 1840년(헌종 6) 식년 감시초시의 낙폭지 일부임을 밝히는 연구⁷⁾가 진행되었다. 또한 경복궁 사정전에 배설되었던 <쌍룡도벽화(雙龍圖壁畫)>의 화판 뒷면에도 1866년(고종 3) 3월 설행된 정시(庭試)의 낙폭지들이 여러 장 배접되어 있던 사실이 밝혀졌다.⁸⁾ 이를

4) 합격한 응시자에게 시권을 되돌려 준 경우도 존재하였다. 김동석은 앞의 글, 2013, 90면에서 河潤寬의 시권을 그 예로 들었다.

5) 『古今釋林』 권28, 「東韓譯語, 釋文」, “凡科試見屈人試紙, 謂之落幅紙.”

6) 『만기요람』 「군정편(軍政篇)」 1, <비변사(備邊司)·소장사목(所掌事目)·낙폭지 지급(落幅紙題給)·落幅紙, 每科場依定式捧甘. 試所元數內收捧三分之二, 鄉試則發關各道, 元數內十分之八捧納, 而待京各司, 各軍門請報, 依定例題給. 至於兩西北道, 會錄於各該監營, 而該道營閫及防營請報, 則量宜指數, 以會錄條中取用之意. 題送. 會試科場亦依初試例收捧, 而未草紙東堂紙與落幅紙, 一體收捧.”

7) 윤선영, 「창덕궁 인정전 日月五峰圖 배접 시권의 내용과 의미」, 『창덕궁 인정전 일월오봉도 보존처리』,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2021, 137-152면.

8) 쌍룡도벽화 뒷면에 배접된 낙폭지들은 철거 당시 보관되지 않고 폐기되어 보고서 상의 사진으로만 남아 있다. 필자는 이에 대한 해독을 의뢰 받아 낙폭지에 기록된 답안을 분석하여 시제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이 낙폭지들이 1866년 정시에서 제출된 답안지임을 밝혀냈다. 이러한 사실은 쌍룡도벽화의 판벽이 후대에 따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사정전을 지었던 당시에 제작된 것임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사실이다. (박윤희, 「사정전 쌍룡도 벽화의 실체와 제작시기 검토」, 『경복궁 사정전 내부 원형 고증과 공간 재현 학술심포지엄 발표자료집』, (재)아름지기, 2022.4.26., 25-26면)

통해 병풍 및 벽화의 제작연대 및 수리 이력을 추정하는 기준선을 마련할 수 있는 등, 낙폭지도 별도의 유물로서 보존 및 연구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고에서는 이점에 착안하여, 조선 시대 과거 시험의 주요한 부산물이라 할 수 있는 낙폭지의 재활용처와 이에 관한 제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 시대에 있어 하나의 시험 제도를 넘어서서 생활사 및 문화사 전반에 영향을 끼친 과거 시험의 실상에 대해 더욱 가까이 접근해보고자 한다.

2. 조선 시대 관청의 종이 물자 부족 실태와 재활용 문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당대 관청에서 사용한 여러 종이 물자들의 실태에 대해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 시대에는 관청의 공문서나 자문(咨文) 등의 외교문서, 서적을 간행하는 데 사용되는 종이를 조지서(造紙署)에서 제조, 관리하였다. 종이 기술자들인 지장(紙匠)은 조지서에 소속되어 집단으로 거주하며 종이 생산 기술을 발전시켜 나갔다. 본 단락에서는 조선왕조실록 등의 여러 사료를 통해, 조선 시대 조정과 관청에서 종이 물자의 생산 및 사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紙地の 품질에 따라 表箋을 베끼는 것을 表紙라 하고, 奏聞을 작성하는 것은 奏紙라 하며, 書狀을 쓰는 것은 狀紙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명분과 실재를 구별하지 않고,公私 안팎에서 모두 두터운 종이[厚紙]를 사용하므로, 이를 제조할 즈음에 미쳐 백성들이 그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辛巳년에 이미 금지령을 내렸으나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어 폐단이 예전과 같습니다. 더구나 지금 또한 조정의 수요가 있어 이를 제조하는 비용이 예전보다 10배에 달하니, 더욱 더 금지하지 않으면 혹 잊지 못할까 두렵습니다.⁹⁾

諸 도감의 謄錄은 후에 고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니, 3-4건 정도만 등사해도 후대에 전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4건을 더 등서하도록 하는 데 이르러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종이불이가 지극히 많아지게 되었으며 모두 擣鍊楮注紙를 사용

9)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1407) 10월 갑진 1번째 기사, “紙地之品, 以寫表箋而謂之表紙, 寫奏聞而謂之奏紙, 寫書狀而謂之狀紙. 今也不分名實, 中外公私, 皆用厚紙, 以致製造之際, 民受其弊. 故歲在辛巳, 已下禁令, 然因仍未革, 弊復如前. 矧今又有朝廷之需, 製造之費, 什倍前日, 不加禁抑, 恐或不繼.”

하니 한 권의 값이 면포 3-4필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 재정이 고갈된 때를 당하였으니 이를 마련해 낼 길이 없습니다. 청컨대 제 도감의 등록 건수는 모두 舊例에 따라 더 이상 등서하지 말 것이며, 어람건 외에는 모두 초주지를 사용하여 비용을 줄이는 것이 어떻습니까?¹⁰⁾

위는 공문서에 사용되는 종이의 품질을 낮추어야 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기사들이다. 이를 통해 조선 시대 조정에서는 공문서를 쓰는 데 두꺼운 품질의 종이를 사용하던 관행이 만연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자, “궁내(宮內)와 국가에서 쓰는 문서를 제외하고는, 계문 등은 모두 백주지(白奏紙)를, 주고 받는 정장(呈狀)은 상주지(常奏紙)를, 관(關)이나 첩(牒) 등 공사(公私)의 서장에는 상주지나 장지(狀紙) 등을 사용하라.”¹¹⁾고 하며 종이 물자의 절약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후대에도 여전히 위와 같은 문제들이 반복¹²⁾된 걸 보면, 조선 초기의 이러한 시행 규정은 그 효과가 미미했던 듯하다. 하지만 신하가 임금에게 종이를 절약해야 함을 직설적으로 간언¹³⁾하는 등 조정에서는 종이 물자 부족 상황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공문서 작성에 있어 좋은 품질의 후지(厚紙) 사용 관행은 고스란히 백성들의 부담으로 이어졌다.¹⁴⁾ 질지[作紙] 부과, 공납의 어려움 등의 폐단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질지[作紙]란, 관청에서 민원 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데 쓰는 종이 값으로 받는 돈을 일컫는 말로, 종이 제작에 사용되는 비용을 별도의

10) 『광해군일기』(중초본) 33권, 광해 2년(1610) 9월 21일 계해 3번째기사, “諸都監謄錄, 不過備後日之考閱, 只謄三四件, 亦足以傳後. 而至於加書四件, 應入紙地極爲浩大, 皆用搨鍊楷注紙, 一卷之價, 亦不下綿布三四匹. 當此國儲告竭之時, 辦出無路, 請諸都監謄錄件數, 竝依舊例, 勿爲加書, 御覽件外, 皆用草注紙, 以省浮費何如?”

11)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1407) 앞의 기사, “自今除內用國用外, 啓聞等皆用白奏紙, 相通呈狀, 用常奏紙, 關牒公私書狀, 通用常奏紙狀紙, 以革前弊, 違者糾理.”

12) 『선조실록』 162권, 선조 36년(1603) 5월 19일 갑술 2번째기사, “供上紙, 紙品精潔, 亦甚長廣, 列邑上納之際, 其難備窘迫之狀, 難以形容. 供上之外, 決不可移用於他處, 而如諭教書及不允批答, 皆以供上紙用之, 非徒極爲未安, 以此, 紙地未免缺乏, 其勢將至於加定民間. 自今以後, 請一切勿用, 教書等紙, 以草注紙, 行用何如?”, 『현종개수실록』 6권, 현종 2년(1661) 8월 23일 기사 1번째기사, “當此年事失稔之時, 凡事不可不減省. 供上紙, 紙品甚厚, 雖以草注紙代之, 似無不可.” 등

13) 『인조실록』 32권, 인조 14년(1636) 2월 10일 을유 1번째기사, “供上紙一事言之, 反正初, 以草注進用, 而今則紙品之好, 過於平時, 一卷之直, 至木綿十匹. 臣以此, 知殿下守約之心愈矣.”

14) 『세종실록』 110권, 세종 27년(1445) 10월 17일 무오 1번째기사, “假令上欲用一張紙, 監司倍數分定州郡, 州郡又倍徒聚斂於民.”

세금으로 부과함으로써 이에 대한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한 셈이다.¹⁵⁾ 이러한 문제점은 종이의 공납과 관련한 여러 폐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종이를 만드는 일의 어려움은 다른 부역보다 배나 심하거나, 종이를 공납하는 수에 있어서는 이 고을[단양]이 유독 많으니, 編戶의 백성들이 지탱하기 어려운 병통에 시달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豊儲倉과 長興庫의 공납은 모두 계목에 의해 會稽에 관계된 품목으로 독책하지만, 예조나 교서관·관상감에도 모두 공납하는 바가 있으니 이를 아우르면 200여 권이나 됩니다. 그러나 公私가 모두 고갈되어 마련해 낼 방법이 없으니 고을이 더욱 곤궁해지고 있습니다.¹⁶⁾

여러 아문의 진배는 각기 정해진 수가 있는데, 이 외에도 진배가 끝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마구 채찍질을 가하니, 얼마 안 되는 하인들은 가재 기물을 전부 팔아서 채우려 함에도 끝내 버티지 못하고 모두 도망갑니다. 현재 장흥고에는 한 장의 종이도 남은 것이 없으며, 관아에도 한 명의 하인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의 6-7개월 동안 한결같이上司의 支供은 모두 호조에서 갖추어 들었는데, 전후에 들인 것을 계산해 보면 거의 1만여 권에 이르며, 시장 상인들에게 빚진 종이 또한 얼마쯤인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¹⁷⁾

위는 장흥고와 풍저창을 비롯하여 각종 아문에 공납하는 종지로 인해 백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의 기사들이다. 종이를 생산하는 일은 다른 공물을 마련하는 것에 비해 훨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수 이외에도 각종 명목으로 요구하는 진배가 끝이 없었던 것이다. 각 관청에서 필요한 수요를 맞추기에는 당시의 공납이 태부족하였던 정황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15) 다산 정약용 또한 정당한 세액 이외에 小民들에게 착취하는 여러 세금 가운데 종이세를 예로 들며 이에 관한 부당함을 피력하였다. 『經世遺表』 7권, 「地官修制·田制(7)」, “今也正額之外, 又以苟且之言, 私乞小民曰, “予解有縮, 爾其添之, 予隸有勞, 爾其酬之, 予僮亦多, 爾其防之, 予吏治薄, 爾輸其紙, 予胥有貢, 爾給厥餼.” 零零瑣瑣, 雜雜猥猥, 曷若正額之上, 直增數斗, 使其名正也?”

16) 『명종실록』 22권, 명종 12년(1557) 5월 7일 기미 2번째기사, “紙貢之弊, 造紙之難, 倍於他役, 貢紙之數, 獨優於此, 編戶之民, 病於難支久矣. 如豊儲·長興之納, 則皆用啓日, 貢以會稽之品, 若禮曹·校書館·觀象監, 皆有所貢, 併爲二百餘卷, 而公私俱竭, 取辦無地, 官益困矣.” 위 상소의 내용은 『錦溪集(外集)』 권7, 「疏·丹陽陳弊疏」에 더욱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17) 『광해군일기』(정초본) 111권, 광해 9년(1617) 1월 3일 3번째기사, “諸衙門進排, 各有定數, 而數外進排, 罔有紀極. 少或遲緩, 鞭扑狼藉, 數少下人, 鬻盡家財, 而終不能支, 舉皆逃散. 長興庫則紙無一張之儲, 司無一介下人. 自去七月, 今至六七朔, 一應上司之支供, 皆自臣曹備納, 前後通計, 幾至萬餘卷, 負債市人之紙, 亦不知其幾許.”

이 때 당시 각종 종이의 공급은 원공(元貢)의 숫자로 몇 달의 지공(支供)도 대지 못할만큼 부족하였으며, 지전(紙廩)에서의 종이 가격은 목면의 두 배 이상으로 치솟았다. 이는 중간 관리들이 공물에 대한 이익을 취하려는 방납의 폐단과도 직결되어¹⁸⁾, 백성들의 삶은 더욱 고통에 허덕일 수 밖에 없었다.

이상에서 조선 시대 관청의 종이 물자 부족과 공급의 실태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당시 관공서에서는 종이 물자 수급에 매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조정에서는 각양의 다양한 종이를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이를 생산 및 제 공하는 백성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물자 절약과 관련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세초(洗草) 작업 후 만든 환지(還紙) 등의 재생종이 사용, 보존 필요성이 비교적 낮은 공문서 작성시 후지 사용의 자제 등이다.

그러나 환지는 그 질질이 조악하여 중요한 문적 등을 제대로 보존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환지를 만들기 위해 공관의 창벽지가 뜯겨지거나, 국가에 필요한 중요 문서가 사용되는 등 주객이 전도 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¹⁹⁾ 또한 환지의 제작은 금전적인 이익과 직결되다 보니, 당시 지장들이 승정원일기나 경서 등 중요 서적을 훔치는 경우까지 발생하게 되었다.²⁰⁾ 이러한 여러 폐단이 드러나게 되자, 환지의 사용을 엄금하게 되었으며 이를 어기는 자에게 곤장 100대와 재산 몰수, 전가사변(全家徙邊) 등 엄한 형벌을 내리기도 하였다.²¹⁾

이처럼 종이를 아껴보고자 했던 여러 노력과는 별개로, 주요 공문서 작성 및 중요 서적의 간행 등을 위해서는 비교적 좋은 품질의 종이가 반드시

18) 앞의 기사. “臣等取考各官貢物紙價木同, 以紙前市直比較, 則倍數措備之外, 所餘之木猶多, 五六十同, 足用於各衙門人情之費. 臣等招致紙前防解頭人曰, ‘兩司貢物, 渠等盡受, 使之如前對答, 而所餘木同分食’ 云, 則皆有樂受之意, 其中一人, 呵禁其類而退. 蓋其意, 則貢物之利, 坐占於中間, 各衙門被侵之患, 則欲使該司當之, 誠可痛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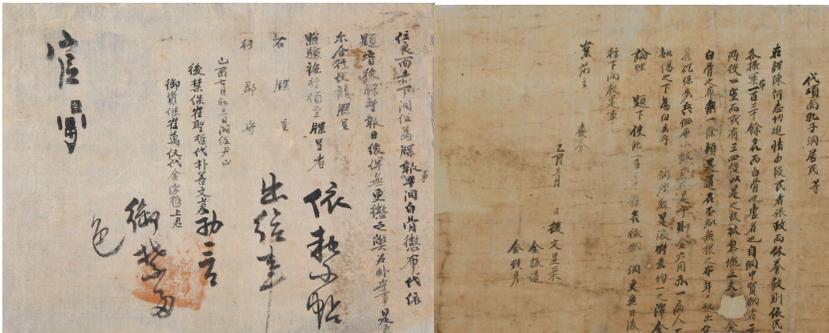
19)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1459) 2월 18일 신미 3번째기사. “司憲府啓, ‘還紙其質麤軟, 隨用隨破, 文籍未得傳久. 且造紙者與諸司胥吏·奴婢共謀, 竊文書以造, 因此公廩窓壁紙及國家緊關文案盡爲還紙, 其弊不貴. 請自今還紙一禁’ 從之.”

20) 『세조실록』 40권, 세조 12년(1466) 11월 17일 을유 2번째기사. “近因還紙之利, 紙匠男女, 或偷承政院日記, 或偷寺社經文. 於是, 嚴立法制, 擬定徙邊, 或行大辟, 然猶未已, 本國文史公私文券, 將至無遺, 至可慮也.”

21) 앞의 기사, “然不立重法, 終不能禁制也. 乞限風俗歸正, 其作還紙者, 依棄毀制書律施行. 其窩主勿論會赦, 勿問貴賤, 杖一百全家徙邊, 以財產給告者. 市裏買賣者, 民家行用者, 官府行用吏典, 竝杖一百, 身充水軍, 官員亦杖一百, 永不敘用.”

필요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다. 그리고 여러 신하들의 간언에도 불구하고, 중요도가 낮은 문서에서조차 후지를 쓰는 관행 또한 지속되었다. 일정 품질 이상의 종이와 필요한 현실과 종이 물자를 아껴야만 하는 상황이 맞물리면서, 육조에 저장하고 있는 서장(書狀)이나 계본(啓本)의 종이들은 물품 제작, 배접 등으로 재활용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생성되었다.²²⁾

이러한 사실은 현재 전해지고 있는 여러 문화재를 통해서도 고증해 볼 수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된 <중국고금역대연혁지도>(소장기호 : 민속28379)는 조선 후기의 학자 병곡 권구(權榘, 1672-1749)가 만든 일종의 세계사 교육용 교재로,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하여 동북아시아 각국의 국호와 왕조 계승 관계 등을 도표로 정리한 역사지도이다.²³⁾ 이 지도를 보존 처리하는 과정에서 배접지로 사용된 고문서 총 16점을 발견하였는데, 내용을 확인한 결과 1849년 금산군수의 첩정(牒呈), 서목(書目), 소지(所志) 등 군역제도와 관련한 공문서였던 것이다.



[사진 1] <중국고금역대연혁지도>에 배접된 1849년 금산군수의 첩정(左, 소장기호 : 민속032554)과 금산군 거민들의 소지(右, 소장기호 : 민속032553),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또한 울산박물관에 소장된 <사계영모도8첩병>(소장기호 : 울산1480)은 조선

22) 『증중실록』 61권, 중종 23년(1528) 4월 16일 정사 12번째기사, “江邊軍士所着甲, 皆敝溥無用, 須多造掩心, 下送. 六曹所藏, 書狀·啓本紙出給, 令軍器寺, 造作掩心見樣, 依見樣, 多數精造.”

23) 전지연·임인경, 「中國古今歷代沿革之圖의 보존처리와 구배접지를 통한 당시 사회상 및 장황 시기 유추」, 『생활문화연구』 23, 국립민속박물관, 2008, 102면 참고.

중기의 대표 화가인 이징(李澄, 1581-?)이 그린 것으로, 4계절의 새와 짐승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이 병풍의 뒷면에는 첩보류 등 공문서, 한글문서, 책지 등 무려 699점의 고문서가 배접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시권 추정 문서 2장이 배접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이 문서에 기록된 시제가 실제로 출제된 시제와 일치하는 기록이 없고, 여러 군데 수정한 흔적이 보이며, 과차(科次) 등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실제 과거 시험장에 제출된 답안지라기보다는 시험 대비용 습작 문서의 일부로 추정된다.



[사진 2] 〈사계영모도8첩병〉에 배접된 고문서 가운데 과거 시험 대비용 습작 문서 2장 (소장기호 : 울산13367), 울산박물관 소장

위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조선 시대의 폐기 처리된 공문서들은 문서 작성에 활용되지는 못하였으나 이를 재생하거나²⁴⁾ 또는 그 자체로 다양한 곳에서 재활용되었다.²⁵⁾ 종이 물자의 태부족으로 인해 공문서의 재활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던 상황 하에서, 정기적으로 치러지던 과거 시험은 재활용 가능한 종이를 한 번에 많이 수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여기에서 수거한 탈락한 답안지는, 더 이상의 쓸모가 없으면서도 지질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재활용하기에 적절한 종이였기 때문이다.

24) 원주역사박물관 소장 〈배접지〉(소장기호 : 소석643)를 보면, 세초 작업으로 인해 원문서의 내용은 지워지고 없으나, 인장 및 수결의 흔적 등을 볼 때 공문서를 재생한 환지임을 알 수 있다.

25)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 〈병풍배접지〉는 독일 오틀리엔 수도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근여전도 병풍(坤輿全圖 屏風)〉의 배접지가 2016년 문화재청에 환수된 것으로, 17세기 전북 익산 지역의 호적대장으로 추정된다.

3. 낙폭지의 다양한 활용처

전술하였듯이, 조선 시대에 재활용 가능한 여러 문서들 가운데 과거 시험 답안지는 수량면에서나 지질면에서나 모두 적합하였다. 그러므로 종이 사용되는 다양한 곳에 낙방 시권이 사용되었음을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낙폭지가 재활용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사료를 통해 보면, 조선왕조실록에 1424년(세종 6) 낙폭지 관련 기사가 처음으로 나온다. 이 기사에서는 종이 갑옷을 만드는 데 필요한 종이를 조달하기 위해서, 문과 식년마다 서울과 각 도의 동당감시(東堂監試)·향관시(鄉館試)·한성시(漢城試)·회시(會試) 등의 낙폭지를 방식에 따라 군기감(軍器監)에 보내어 쓰게 하라는 내용이다.²⁶⁾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이미 군수 물품으로 낙폭지를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낙폭지와 관련한 후대의 기록은 1887년(고종 24)의 기록으로 확인되는데, 낙폭지가 도난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당시의 파수꾼[把守軍]에 대한 처분을 기다리겠다는 형조의 계문이다.²⁷⁾

과거 시험이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된 점을 상기해 볼 때, 낙폭지는 과거가 설행된 조선 시대 전(全) 시기동안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시험이 끝난 후 수권(收券)되어 낙폭지로 분류된 이 시권들은 과연 어떠한 곳에 쓰이게 되었을까? 본 단락에서는 낙폭지가 재활용된 다양한 활용처를 크게 국방·건축·문화재의 세 가지 방면으로 나누어 소개해 보고자 한다.

1) 군사 물품

낙폭지가 요긴하게 활용된 곳은 단연 군사 물품이었다. 당시 서북 지방은 국방의 요충지였는데, 몹시 추웠기 때문에 군인들이 따뜻하게 입을 옷이 필요했다. 낙폭지를 면포에 싸서 솜 대신 넣어 만든 옷을 지의(紙衣)라 하는데,

26) 『세종실록』 24권, 세종 6년(1424) 5월 25일 기해 5번째기사, “文科式年, 以京中及各道東堂監試·鄉館試·漢城試·會試落幅紙, 依式送于軍器監用之.”

27) 『승정원일기』 고종 24년(1887), 12월 6일 무자 기사, “刑曹啓曰, 謹依下教, 內三廳把守禁軍諸漢, 一捉致查問是乎則, 金光鈞·金榮信·梁致福等所告內. 今日早朝, 忽自統長廳, 招入矣等, 問以思政門東廊後壁有穿穴處, 至於落幅紙若干盜竊之變, 而汝等職在把守, 初不見知乎云是自只.”

이를 군졸들에게 나누어 준 것은 전장(戰場)에 편리하면서도 바람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²⁸⁾

북방은 추위가 몹시 심한 곳이어서, 천 리 밖에서 국경을 지키는 수고로움은 평상시에 있어서도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 대군이 모여 비바람을 맞은 지가 이미 오래이니, 이들을 위무하고 분발시켜야 힘이 마땅합니다. 이 때를 당하여 특별히 御帑를 파견하여 교서를 보내시고 음식을 마련하여 잔치를 베풀소서. 이어 전일에 내려 보낸 낙폭지 2천장과 개 가죽 등의 물품을 군사들 가운데 옷이 지나치게 얇은 자에게 지급하고 조정의 덕스러운 뜻으로써 화유한다면 따뜻한 솜옷을 입고 동고동락하는 듯한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²⁹⁾

위 기사는 서북의 군사들이 옷을 만들어 따뜻하게 입을 수 있도록 낙폭지를 내려줄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문이다. 찬 바람을 맞으며 얇은 옷으로 나라를 지키는 군사들을 위해 낙폭지를 지급하여 이들을 위무해야 마땅함을 말하고 있다. 서북방의 군사들에게 낙폭지나 이로 만든 옷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은 여러 기사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군사들을 걱정했던 좋은 마음에서 비롯되었던 일에도 점차 폐단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국가의 물력을 헤아리지 않고 터무니없이 많은 수량의 옷을 지급하거나, 군사들 가운데 새로이 지급 되는 옷을 받기 위해 아예 옷을 벗고 점검을 하는 간사한 무리들까지 생겨나는 옷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 것이다.³⁰⁾

火箭이나 掩心甲 등의 물건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에 가장 유용한 무기인데,

28) 『명종실록』 6권, 명종 2년(1547) 8월 3일 신사 1번째기사, “戍邊軍卒, 造給衲衣, 此實美政. 然所受人, 一無著持者, 或分劈爲單衣, 或賣與胡人. 當初以落幅紙, 綿布爲裏造給者, 爲便於戰場, 又能禦風也.”

29) 『선조실록』 192권, 선조 38년(1605) 10월 4일 을사 2번째기사, “北塞, 寒苦之地, 千里防戍之勞, 其在平時, 已不可勝言. (...) 而大衆聚會, 暴露已久, 慰諭營勳之舉, 似不可已. 宜及此時, 別遣御史, 齎奉教書, 設行犒宴, 仍將前日下送落幅紙二千張及狗皮等物, 擇軍中尤甚衣薄者俵給, 諭以朝廷德意, 則未必無挾纊投醪之感矣.”

30) 『승정원일기』 인조 19년(1641) 11월 17일, “戶曹啓曰, 以兵曹公事, 因備忘記, 薄衣軍士, 摘奸一百三十八名, 造衣題給事, 啓下矣. 上番軍士冬月給衣, 特出於軫念凍死, 察其中, 尤甚單薄者, 每年所給若干領而已. 其流之弊漸廣, 今則至於一百三十領之多, 雖曰木花稀貴之所致, 民間所貴之木花, 該曹無從而得之, 不計國力, 何如? 每人而悅之, 終年在家, 奉足收布, 二朔立番之軍, 待之如此, 負羽從軍之類, 又何以加之? 或云, 奸人之脫衣違點者有之, 不可謂全無其弊矣.”

두꺼운 종이 아니고서는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금번 京外의 감시낙폭지를 우선으로 本寺[軍器寺]에 이송하게 하여 기한 내에 만들어 전쟁에 쓸 수 있도록 承傳을 받들어 시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³¹⁾

軍器·旗幟와 帳幕·雨具 및 4장을 이어 붙인 油菴의 경우는 만들어 둔지 오래되어 거의 다 파손되고 부서져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式年에 해당된다면 낙폭지를 청하여 보태어 쓴 전례가 이미 있으므로 이에 첩보합니다. 본 도 감시소의 낙폭지 10축을 특별한 예로 획급하여 제반의 우구를 갖출 수 있도록 분부를 내릴 일입니다.³²⁾

위는 화전(火箭)과 엄심갑(掩心甲), 그 밖의 군수 물품을 만드는 데 사용할 낙폭지를 이송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기사들이다. 화전이란 조선 전기부터 사용한 화살로, 이를 만들 때 약포(藥包)를 종지와 베로 감싸 노끈으로 매다는데, 이때 들어가는 종이가 곧 낙폭지인 듯하다. 엄심갑은 가슴을 가리는 갑옷으로, 종이를 소금물에 담갔다 햇볕에 말리어 베와 실로 섞어 꿰매어 만들었다. 이 엄심갑은 화살이 잘 들어오지도 않고, 활을 쓰기에도 편리하여 적을 막는 데 효과적이었으며 만드는 데 들어가는 공력도 갑옷보다 수월했다.³³⁾ 엄심갑의 주 재료가 되는 종이는 어느 정도 두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낙폭지는 이를 만드는 데 알맞은 종이였다. 또한 군영의 장막과 비를 막는 기구인 우구(雨具), 두꺼운 기름 종이를 이어 붙여 비를 막는 데 사용했던 유둔(油苫), 비를 가리는 옷인 우비(雨備) 등에도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민간에서의 방한물품, 군기 물자의 보수, 방수품³⁴⁾ 등을 만드는

31) 『승정원일기』 인조 4년(1626) 9월 20일 기사, “至於火箭·掩心等物, 最爲制勝之利用, 而若非厚紙, 無以造成. 今此京外監試落幅, 爲先移送於本寺, 及期措得戰用事, 捧承傳施行, 何如?”

32) 『各司謄錄』·「忠清水營關際·純祖, 순조 10년(1810), “其中軍器旗幟與帳幕雨具及四張付油菴, 造置年久, 擧皆破傷, 所見極爲不似是乎, 所如當式年落幅紙, 請得補用, 已有前例是乎等, 以茲以牒報爲去乎, 本道監試所落幅紙, 限十軸, 特爲拔例劃下, 以爲諸般雨具備上之地, 行下爲只爲.”

33) 『승정원일기』 연산 5년(1499) 10월 23일 기사, “臣到碧團鎮, 見軍士有着掩心者, 取來問之云, 以紙漬鹽水曝乾, 與布絲交雜縫合, 又以黑絁布(裏)外, 白布爲內, 間以紙繩穿結若頭釘然, 矢不易入, 射弓亦便, 兼可禦敵, 而所造之功, 不如造甲之難.”

34) 『승정원일기』 영조 36년(1760) 1월 22일 기사, “軍中若逢雨雪, 則軍卒不無寒凍之患, 以科場落幅紙, 善爲鑽柔, 以作袴襪, 均塗生油. 且以牛皮製作, 月五嗜複着, 則嚴冬雨雪, 可無凍傷之患, 而戰笠則又以牛皮善作, 以油塗之亦好, 而流來砲矢可防矣.”

테에도 낙폭지가 활용되었으며, 이는 굉장히 긴요한 물자였다.

2) 건축물의 부재(部材)

낙폭지가 대량으로 쓰인 또 다른 분야는 바로 건축물의 영건(營建)과 관련하여 그 재료로서의 쓰임이다. 하나의 건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재료들이 소용되는데, 이 가운데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종이’이다. 각종 영건도감의례의 품목부 및 실입부에는, 하나의 구조물을 짓기 위해 들어가는 다양한 재생 종이들의 종류와 수량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다. 이를 살펴봄으로써 건축물의 영건에 있어 낙폭지의 역할이 얼마나 주요했는지 가늠할 수 있다.

도배에 들어가는 것

백능화지 38권 8장, 청능화지 8권 14장

감시낙폭지 221축 8장, 정시낙폭지 70축³⁵⁾

초배(初褙)에 감시낙폭지 8축 2도³⁶⁾【호조】

정배(正褙)에 백능화지 8권 13장³⁷⁾

도배는 영건시 낙폭지가 가장 많이 쓰인 부분으로 낙폭지는 초배(初褙) 작업에서 주로 쓰이며 정배(正褙, 下褙라고도 함)에는 백능화지, 청능화지 등을 썼음을 알 수 있다. 도배에는 감시낙폭지와, 정시낙폭지 등이 고루 사용되었으며 동당낙폭지는 잘 사용되지 않았다. 후술하겠지만, 동당낙폭지는 주로 중요한 서적 및 공문서 등의 서갑, 서축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낙폭지는 각 종이마다 그 지질이 균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지질이 좋지 않은 낙폭지들이 초배나 장지의 안쪽을 바를 때 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35) 『昌慶宮營建都監儀軌』 1, 168면, “塗請所入, 白菱花三十八卷八張, 靑菱花八卷十四張, 監落二百二十一軸八張, 庭落七十軸.”

36) 1도는 낙폭지 2장을 의미하며(屈冠을 만드는 데 쓰일 때는 20條가 1도), 1축은 10도, 즉 20장을 의미한다. 이는 과거 시험을 볼 때 10장을 한 묶음으로 하여 천자문의 순서대로 字號를 부여한 것과는 상이한 부분이다. (『度支準折』「紙地」, “監試落幅紙一軸【二張作一度, 十度作一軸(…) 屈冠次二十條作一度】”)

37) 『宗廟永寧殿增修都監儀軌』 1, 301면, “初褙監試落幅紙八軸二度【戶曹】, 正褙白菱花八卷十三張”

장지 및 문짝감으로 소소리목(小條里木) 4개, 살(簾) 감으로 장송판 1립, 봉두(鳳頭)감으로 피나무판 반립, 어교 5량, 대자리 길이 1자 4치 너비 1자 5치짜리 4편, 감시낙폭지 2도(度)³⁸⁾

장지의 3쪽 내외를 바르는 감으로 감시낙폭지 9도, 백능화지 1권 10장, 온돌 바닥을 바를 백유지 7권, 각장 12장, 반자 30정(井)을 바르는 감으로 감시낙폭지 15도, 왜능화지 90장, 서쪽 변 1쪽에 감시낙폭지 2도³⁹⁾

이처럼 건물의 장지[障子]와 문짝, 반자[班子], 창호 등을 새로 만들고 보수하는 데에도 낙폭지가 필수적으로 사용되었다. 장지란, 방의 아랫칸 또는 방과 마루 사이를 가리어 막은 문을 가리킨다. 미단이와 유사한 형태로, 운두가 썩 높고 문지방이 낮게 되어 있다. 반자란 지붕의 하단 구조 또는 복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상부층의 바닥 하단 구조를 가리어 꾸며둔 것으로, 종이로 바른 천장을 가리킨다.

이 밖에도 두석장(豆錫匠) 등의 각종 장⁴⁰⁾과 들쩌귀(扈迪耳) 등의 부품에도 낙폭지가 사용⁴¹⁾되는 등 건축물과 관련한 다양한 부재로 활용된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3) 서화류의 포장 및 배접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기록 및 인쇄문화가 가속적으로 발달하였으며, 서화류 미술품 또한 활발하게 제작되었다. 하지만 쉽게 찢어지고 변형되기 쉬운 종이의 특성상, 중요 전적 및 공문서와 미술품 등을 온전히 보관하기란 쉽지 않았을 터이다. 이에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주요한 서적 및 공문서를 포장하거나, 미술품을 배접하는 데 낙폭지를 사용하여 유물의 결락 및 변형을 막고자 하였다.

38) 『純祖]王世子冠禮冊儲都監儀軌』 1, 123b면, “障子及門隻次小條里木四箇, 箭次長松板一立, 鳳頭次檜板半立, 魚膠五兩, 竹簾長一尺四寸廣一尺五寸四片, 監試落幅紙二度.”

39) 『景慕宮改建都監儀軌』 1, 237면, “障子之介具三隻內外塗次, 監試落幅紙九度, 白菱花一卷十張, 埃下排白休紙七卷, 各張十二張, 班子三十井塗精次, 監試落幅紙十五度, 倭菱花九十張, 西邊之介一隻, 監試落幅紙二度.”

40) 『孝懿王后國葬都監儀軌』 2, 185면, “豆錫匠所用落幅紙半度”

41) 『宗廟改修都監儀軌』 1, 308면, “扈迪耳次落幅紙以用餘推移用之次”; 『南殿增建都監儀軌』 1, 119면, “機精及扈迪耳次監試落幅紙十三度” 등 건축 관련 부품에도 낙폭지가 사용된 용례를 다수 볼 수 있다.

고서 및 등록을 싸는 감으로 동당낙폭지 1장 반과 문서에 들어가는 풀가루 [膠末] 5홉[勺] 등의 물건을 내려 진배하는 일을 각 해당 관사에 봉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⁴²⁾

도감의 각양 문서를 엮은 축(軸)을 싸는 감으로 동당낙폭지 2도(度)를 등록에 의거하여 진배하는 일을 봉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⁴³⁾

위는 의궤에서 서축(書軸) 등과 관련하여 낙폭지가 활용된 예를 볼 수 있는 기록들이다. 주로 ‘서의(書衣)’, ‘책의(冊衣)’, ‘가의(假衣)’ 등의 용어와 함께 낙폭지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등록(謄錄) 등의 서축을 만드는 데에는 동당낙폭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감시낙폭지도 흔히 사용되었으나, 정시의 낙폭지는 비교적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 이는 영건에서 도배 및 문짝 등에 감시와 정시낙폭지가 주로 사용된 것과는 대비되는 측면이다.

이번에 태묘(太廟)를 이안할 때 배설할 병풍에 들어갈 감시낙폭지는 다른 데서 취할 길이 없어 이처럼 이문하오니, 낙폭지 34축을 관문(關文)이 도착하는 대로 빠르게 수송하여 제 때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⁴⁴⁾

모란병풍 7좌(坐)를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것
 겹 감 및 회장(回裝)을 두르는 감으로 청롱화 3권 10장, 안 감으로 아청포(靑靑布) 93자, 청염지 1권 11장, 정시낙폭지 10장, 남궁전지(藍宮箋紙) 14장, 후백지 14장 (...) ⁴⁵⁾

미술품과 관련해서는 병풍에 주로 활용되었는데, 위 인용문을 통해 병풍을 제작할 때와 보수할 때 낙폭지가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주로 원본의 뒷판에 낙폭지를 덧댐으로써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고 파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42) 『肅宗仁顯后冊禮都監儀軌』 1, 254면, “書衣次及謄錄衣次, 東堂落幅紙一張半, 文書所用膠末五合等物, 上下進排事, 各該司良中, 捧甘何如?”
 43) 『[仁敬王后]殯殿都監儀軌』 1, 207b면, “都監各樣文書作軸衣次, 東堂落幅紙二度, 依謄錄進排事, 捧甘何如?”
 44) 『宗廟改修都監儀軌』 1, 135면, “今此太廟移安時所排, 屏風所入監試落幅紙, 他無取用之路, 如是移文爲去乎, 同落幅紙三十四軸, 到關卽時, 星火輸送, 以爲及時取用之地, 宜當向事”
 45) 『哲仁王后國葬都監儀軌』 2, 143a면, “牧丹屏七坐修補所入, 衣及回粧次靑菱花三卷十張, 裏次靑青布九十三尺, 靑染紙一卷十一張, 庭試落幅紙十張, 藍宮箋紙十四張, 厚白紙十四張 (...)”

그러나 병풍이나 벽화 같은 서화류 유물은 특히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설된 정전(正殿)에 비가 새어 습해질 경우 터지거나 찢어질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다. 이러한 이유들로 병풍에 손상된 부분이 생길 경우에, 다시금 낙폭지를 사용하여 보수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3] 창덕궁 인정전 <일월오봉도 병풍>의 뒷판 앞면(좌)과 낙폭지 일부(우)



[사진 4] 경복궁 사정전 <쌍룡도벽화>의 뒷면(좌)과 낙폭지 일부(우)

위는 창덕궁 인정전에 배설된 <일월오봉도 병풍>에 배접된 30여 장의 시권 가운데, 한 첩의 앞 면에 연이어 붙어 있는 모습과 시제가 기록된 한 장의 사진이다. 아래는 경복궁 사정전에 걸쳐 있었던 <쌍룡도벽화>의 해체 작업 당시 벽화의 뒷면에 수십장의 시권이 배접되어 있는 모습과, 비교적 온전한 답안이 기록된 한 장의 사진이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배접된 낙폭지들의 시제 및 답안 분석을 통해 <일월오봉도

병풍)의 배접지는 1840년(헌종 6) 식년감시초시의 답안지였으며, <쌍룡도벽화>의 배접지는 1866년(고종 3) 정시(庭試)의 답안지였음을 밝혔다. 이처럼 현재 실물로 전해지고 있는 낙폭지들이 그림이나 병풍의 뒷면에 배접되었던 것임이 확인되므로, 사료와 그 내용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4) 각종 의복 등 기타

낙폭지는 각종 의식과 의례에도 활용되었다. 의례에서 주로 사용된 곳은 복식과 관련한 것으로, 혼례 때 입었던 예복⁴⁶⁾이나, 굴관(屈冠) 및 두건 등에 주로 쓰였음을 볼 수 있다. 굴관은 상복을 입을 때 두건 위에 덧쓰는 건을 말한다. “굴관을 배접하는 감으로 낙폭지 16조리(條里)⁴⁷⁾”, “굴관과 두건을 배접하는 감으로 낙폭지를 실입에 따라 진배할 것이며⁴⁸⁾” 등의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의복에 쓰인 낙폭지는 주로 옷이나 모자 등의 형태를 뺏뺏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 밖에도 도침(擣砵)이나 인쇄 등 책의 간행과 관련한 작업에도 낙폭지가 사용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도침이란, 종이를 다듬잇돌에 올려 놓고 방망이로 두드려 단단하고 윤택이 나게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 인쇄 작업에 들어가는 여러 도구(印役諸具) 가운데 “습지 위아래에 대는 두꺼운 종이 6장【낙폭지를 사용함】⁴⁹⁾”, “正本을 도침하는 데 사용할 감시낙폭지 1도를 진배할 것【호조】⁵⁰⁾” 등의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이러한 인쇄 작업에 쓰인 낙폭지는 주로 위아래로 덧대어 문서의 정보를 감싸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 외에, 의궤 등의 기록에 유감락(油監落), 유절락(油節落)이라는 용어가 확인된다. 감락(監落)은 감시낙폭지의 줄임말이며, 절락(節落)은 절일제(節日製) 낙폭지의 줄임말로 추정된다. 이러한 종이들에 들기름을 바른 것이 바로 유감락과 유절락인데, 유감락은 주로 작은 상자(匣)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으며⁵¹⁾, 유절락은

46)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활옷>(창덕 23440)은 왕실의 혼례에서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옷안의 종이심을 내시경 카메라로 살펴본 결과 낙폭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윤선영, 앞의 글, 140면.

47) 『[文祖]綏陵遷奉都監都廳儀軌』 4, 2a면, “屈冠襟接次落幅紙十六條里”

48) 『孝明世子殯宮魂宮都監儀軌』 3, 4a면, “屈冠及頭帶襟接次落幅紙從實入次進排爲於”

49) 『英宗大王實錄廳儀軌』 2, 8a면, “濕紙上下隔厚紙六張【用落幅紙】”

50) 앞의 책, 56a면, “正本擣砵所用, 監試落幅紙一度進排事【戶曹】”

도배를 할 때 초배 이후의 정배에서 주로 사용되었음⁵²⁾을 볼 수 있었다.

이상에서 낙폭지가 재활용된 분야에 대해 살펴보았다. 방한 및 방수를 요하는 군사 용품부터 각종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가는 온갖 부재들, 주요 공문서와 서화류 물품을 포장하고 배접하는 역할, 각종 의복이나 인쇄 작업 등 한마디로 종이와 종이와 필요한 모든 곳에 낙폭지가 사용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그만큼 낙폭지가 재활용되기에 좋은 조건을 두루 가지고 있었음을 또한 반증하는 사실이라 하겠다.

4. 낙폭지 활용의 제양상

위 단락에서는 각종 낙폭지들이 어떠한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었는지, 활용처를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각기의 활용처마다 시종별(試種別)로 빈도에 차이가 있는 점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낙폭지들이 활용되는 양상에 대해 더욱 세분화하여 고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므로 이 단락에서는 재활용되는 낙폭지들을 시종별과 시기별로 나누고, 서로 간에 드러나는 차이점이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시종별(試種別) 양상

의궤 등에 기록되어 있는 재활용된 낙폭지는 크게 감시낙폭지(監試落幅紙)와 정시낙폭지(庭試落幅紙), 동당낙폭지(東堂落幅紙)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물론 앞에 특별한 시종을 표기해 주지 않고 그저 “낙폭지”라고만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 어디에 속하는지 단정지을 수는 없다. 다만, 본고에서는 시종까지 정확히 기록해 준 경우로 한정하여 그 대략적인 분포를 개괄해 보고자 한다.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의 의궤 등 고도서 원문검색서비스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세 종류의 낙폭지가 재활용된 1400여 건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감시낙폭지가 가장 많이 활용된 것(약 66%)으로

51) 『進儀儀軌』 3, 22b면 “匣次油監落五張” 등.

52) 『影幀摹寫都監儀軌』 1, 60a면, “下禱白紙四卷, 油節落十五張” 등.

보이며, 그 다음이 동당낙폭지(약 25%)였다. 감시낙폭지가 동당낙폭지보다 훨씬 많이 사용된 이유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감시의 응시 인원이 문과보다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권된 시권의 수도 더욱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1835년(헌종 1)까지 이어진 문과 식년시의 역서(易書) 제도로 인해, 오히려 생원·진사사에서 권력 가문의 자제들이 품호지(品好紙)를 사용했던 경우가 많았던 점⁵³⁾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다.

정시낙폭지의 경우(약 9%)는 위의 두 시험에 비해 활용된 기록의 수가 현저히 낮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정시의 응시 인원이 두 시험에 비해 적었던 점, 시험의 절차가 간소했던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이번에는 용도에 있어서 각 시종별로 감지되는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자. 앞 단락에서 낙폭지의 재활용처를 크게 군사물품, 건축물의 부재, 서화류 포장 및 배접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우선 감시낙폭지는 세 분야에서 골고루 사용된 점을 볼 수 있었다. 이 가운데 특히 영건의 분야에서 도배 및 장지를 바르는 데 감시낙폭지가 가장 많이 사용된 점을 알 수 있었다. 감시낙폭지는 양적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지의 지질이 균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좋은 지질의 낙폭지는 서화류 배접 등에, 그 이외의 것은 군사물품이나 도배의 초배 등에 쓰였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동당낙폭지의 경우는 서화류의 포장 및 배접에서 가장 많이 쓰인 반면, 도배와 관련한 활용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감시낙폭지가 여러 분야에 골고루 사용된 것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탁지준절(度支準折)』에 기록된 낙폭지의 가격을 살펴보면, 감시낙폭지의 경우 1장당 2전(錢)에, 정시 및 동당낙폭지는 3전에 거래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⁵⁴⁾ 이로써 볼 때 각 시종마다 시지의 지질은 상이하였으나, 대략적인 지질은 동당 = 정시 ≥ 감시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정시낙폭지는 감시낙폭지와 더불어 영건 분야에서 가장 많은 활용을

53) 김동석, 『조선시대 선비의 과거와 시권』,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1, 56면 참고.

54) 『度支準折』「紙地」, “監試落幅紙一軸【二張作一度, 十度作一軸○賃錢四兩, 一張錢二錢(…) 庭試東堂落幅紙一張價錢三錢”

보였다. 그리고 19세기 이후의 의궤에서 마경장(磨鏡匠), 찬혈장(鑿穴匠) 등 각종 장인이 사용한 부재에서 정시낙폭지를 자주 볼 수 있었다. 마경장은 거울 등의 금속제의 표면을 갈아 윤을 내던 장인이며, 찬혈장은 총알이 나갈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놓은 총신(銃身)을 만드는 장인을 의미한다. 특정 시기 이후에 이러한 기록이 계속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거울을 갈거나 총신을 만드는 데 있어 낙폭지가 부재로 사용되기 시작한 점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어떠한 물품을 만들거나 사용할 때 전례에 의거하는 관습 등도 많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감시는 모든 분야에서, 정시와 동당 낙폭지는 각기 주로 사용된 분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을 뿐, 시종간 낙폭지의 용도별 차이점이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 이를 통해 각 시종의 평균적인 지질이 상이하였으며, 같은 시종 가운데서도 지질에 따라 사용처가 분류된 것을 알 수 있다.

2) 시기별 양상

그렇다면 낙폭지의 재활용에 있어 각 시기별로 변화되는 양상이 있을까? 전체적인 기록 양상부터 살펴보자면,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사료 등에 처음 낙폭지라는 기사가 보이는 것은 1424년(세종 6)이며, 후대의 기록은 1907년에 간행된 『[고종]존봉도감의궤([高宗]尊奉都監儀軌)』의 「품목질(稟目秩)」에서의 기록이다. 의궤에서는 1632년(인조 10)의 『[인목왕후]산릉도감의궤([仁穆王后]山陵都監儀軌)』를 시작으로 하여 17세기부터 기록이 늘어났으며, 18세기, 19세기의 의궤에 낙폭지에 대한 기록이 집중되어 있었다. 여러 자료 속의 기록을 통해 낙폭지는 조선 중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과거제도가 폐지되고 10여 년이 지난 시점까지 꾸준히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자. 17세기 이전의 기록들은 군사 물품 및 방한과 관련한 기록이 주를 이룬다. 조선 초기 이후 종이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낙폭지가 좋은 대안으로 떠올랐고, 이는 생존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긴급하고도 급박한 곳으로부터 쓰여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대부분의 자료에 ‘落幅紙’라고만 기록되어 있었으며 의궤에서는

실입질(實入秩) 등에 낙폭지라는 물목명과 수량 정도만 기록한 경우가 많았다. 1632년에 간행된 『[인목왕후]산릉도감의궤』에 〈잡물총수(雜物總數)〉라는 목록으로 ‘落幅紙二十二張’이라고 기록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17세기 말엽부터 주요 공문서와 등록 등의 서축에 사용된 예를 볼 수 있다. 기록 또한 ‘監試落幅紙’ 등 구체화하여 시종도 분류해주기 시작⁵⁵⁾하였으며 사용되는 곳을 보다 명확히 적어 주기 시작하였다. 18세기로 접어들면 도배 등 각종 영건 작업에 사용된 기록을 흔하게 볼 수 있었다. 영건의궤는 1633년(인조 11) 『창경궁수리소의궤』를 시작으로 17세기 중반부터 활발히 편찬되었는데, 낙폭지가 의궤에 기록된 것은 18세기 초반 무렵으로 파악된다. 이는 낙폭지가 건축물의 부재로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에 관한 단서가 된다.

18세기 중엽부터는 각종 인쇄 작업 및 서화류 유물의 배접에 사용된 기록을 볼 수 있었다. 실록을 도침하고 인출하는 데 쓰이거나 병풍 등을 배접하는 데 낙폭지가 활용되기 시작한 점은 이 시기 한층 높아진 문화 수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군사물품 또한 방한, 방수 등의 생활 목적에서 소총이나 기구 등 용품에 활용되는 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군사 물품과 관련한 기록의 비중이 대폭 축소되었다는 점 외에는 영건 및 서축 포장 등에서 여전히 낙폭지가 활발히 사용되는 등 18세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을 보였다. 1894년(고종 31)에 과거시험이 폐지되면서, 20세기 이후의 사료에는 낙폭지에 관한 기록 또한 줄어들게 된다. 이 때의 기록은 서축의 포장과 관련한 것만 소소히 보일 뿐, 대부분은 각종 장인들이 자신들이 담당할 기물을 만들 때 부재로 사용했던 것이 확인된다. 1903년에 간행된 『[효정왕후]국장도감의궤(孝定王后國葬都監儀軌)』나 1907년에 간행된 『존봉도감의궤(尊奉都監儀軌)』를 살펴보면, 숟가락 만드는 장인[匙匠], 은으로 그릇을 만드는 장인[小銀匠], 찬혈장 등 다양한 장인들의 기물에 사용된 낙폭지의 마지막 흔적을 볼 수 있다.

55) 감시낙폭지라는 용어는 조선왕조실록에서 1606년(선조 39)에 가장 먼저 보이기 시작하며, 의궤에서는 1702(숙종 28)부터 보인다. 동당낙폭지는 1694년(숙종 20)에, 정시낙폭지는 1764(영조 40)에 처음 보인다.

결론적으로, 조선 중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낙폭지의 명명과 사용처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낙폭지의 활용분야는 군사물품—서축 포장—도배 등 건축 관련—인쇄 등 출판 관련—병풍 등 서화류 미술품 배접—온갖 기물의 부재의 순서로 점차 다양해지고 확대됨을 볼 수 있었다.

5. 나가며

이상에서 조선시대 과거 낙폭지가 재활용된 분야와 제약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선 후기 종이 물자가 매우 부족했던 상황 하에서, 과거 시험 설행 횟수 등의 증가로 확보되는 낙폭지 수가 많아진 상황이 맞물리게 되면서 종이 필요한 분야마다 낙폭지가 활발하게 사용되었다. 낙폭지는 본래 시지(試紙)로 준비되었던 종이인 만큼 어느 정도 지질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재활용되기에 좋은 요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또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낙폭지들은 현재 전해지고 있는 여러 문화재들을 복원하고 보존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발견되고 있다. 이를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해당 문화재의 제작 시기 및 원형 상태를 추측하는 단서가 되기도 하는 등 이 또한 제대로 보관하고 분석해 보아야 할 문화재라는 인식이 제고되어야 할 시점이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 과거 시험장에서 거두어들이는 낙폭지와 본부에 올려지는 수량에 차이가 발생하고, 본부에 상납된 낙폭지의 품질이 낮아 제대로 활용할 만한 수량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한 여러 문제 또한 발생하게 된다.⁵⁶⁾ 또한 낙폭지가 돈과 권력의 의미를 가지고 다루어지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면의 한계로 관리들의 낙폭지 착복, 시장에서의 유통, 민간에서의 활용 등 낙폭지를 둘러싼 여러 생활상의 모습은 다루지 못하였다. 이는 후일의 연구로 지속하고자 한다. 

56) 『조선왕조실록』, 영조 14년(1738) 2월 17일 기사, 『各司謄錄』「江原監營關牒○高宗」, 고종 12년(1875) 기사 등에 보인다.

■ 참고문헌

- 『各司謄錄』, 국사편찬위원회 편
 『景慕宮改建都監儀軌』,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소장기호 奎13633)
 『南殿增建都監儀軌』,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소장기호 奎14354)
 『萬機要覽』, 한국고전번역원 간행
 『[文祖]綏陵遷奉都監都廳儀軌』,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소장기호 奎13759)
 『[肅宗仁顯后]冊禮都監儀軌』,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소장기호 奎13086)
 『[純祖]王世子冠禮冊儲都監儀軌』,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소장기호 奎13119)
 『承政院日記』 (sjw.history.go.kr)
 『影幀摹寫都監儀軌』,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소장기호 奎13982)
 『英宗大王實錄應儀軌』,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소장기호 K2-3772)
 『[仁敬王后]殯殿都監儀軌』,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소장기호 奎13554)
 『朝鮮王朝實錄』 (sillok.history.go.kr)
 『宗廟改修都監儀軌』,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소장기호 奎14225)
 『宗廟永寧殿增修都監儀軌』,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소장기호 奎14226)
 『進饌儀軌』,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소장기호 奎14370)
 『哲仁王后國葬都監儀軌』,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소장기호 奎13860)
 『度支準折』, 고려대 소장
 『孝明世子殯宮魂宮都監儀軌』,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소장기호 奎13721)
 『孝懿王后國葬都監儀軌』,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소장기호 奎13649)

- 김동석, 『조선시대 試券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3.
 박운희, 「사정전 쌍룡도 벽화의 실체와 제작시기 검토」, 『경복궁 사정전 내부 원형 고증과 공간 재현 학술심포지엄 발표자료집』, (재)아름지기, 2022.4.26.
 박현순, 「17세기 과거 응시자 증가 현상에 대한 고찰」, 『사학연구』 93, 한국사학회, 2009.
 윤선영, 「창덕궁 인정전 日月五峰圖 배접 시권의 내용과 의미」, 『창덕궁 인정전 일월오봉도 보존 처리』,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2021.
 이한희, 「조선시대 기록물의 생산 및 처리과정과 보존」, 『서지학연구』 37집, 한국서지학회, 2007.
 전지연·임인경, 「中國古今歷代沿革之圖의 보존처리와 구배접지를 통한 당시 사회상 및 장황 시기 유추」, 『생활문화연구』 23, 국립민속박물관, 2008.

【Abstract】

Recycling culture of Nakpokji which flunked answer sheet
after Civil service examination in Chosun Dynasty

Yoon, Sun-young*

This paper focused on various application answer sheet after civil service examination in Chosun dynasty. Before the full-scale discussion, in the first place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of various papers used in government office. At the time official documents were short of paper because the custom of using good quality paper. In these circumstances, Nakpokji (落幅紙, Flunked answer sheet) which returned answer sheet of Civil service examination had all the good conditions to be recycled. Nakpokji recycled various fields etc military goods, materials of ancient buildings, the packaging of important documents and books, backing paper of art work, clothing and appliances, objects made by various craftsmen. This has been used in most areas where paper is needed. Paper of Gamsi (監試, a preliminary examination) used evenly in all areas. Jeongsi (庭試, a special examination) frequently used in field of architecture and objects. Dongdang (東堂, the main examination) used packaging of important documents and books chiefly. As the time passed, the use of the place was further expanded and subdivided. Currently, Nakpokji are being found one by one during the preservation process of the relics. Through the work of analyzing this, it can also be a clue to guess the production timing and circular state of the cultural property. Therefore, it is time to raise the perception that this is also a cultural property that should be properly stored and analyzed.

Keywords: Chosun Dynasty, Official document, Civil service examination (科擧),
answersheet (試券), Nakpokji (落幅紙, Flunked answersheet), Recycling.

접수일: 2022.09.30. || 심사일: 2022.10.18. || 게재확정일: 2022.11.25.

* Research professor, Inst. for Sinographic Literatures and Philology, Korea Univ.